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년 6월 29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5년 7월 1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7월 8일

제19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도시국장 김 석 동

나. 제안이유

- 상위법령상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주민의 금전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 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금전부담을 완화하고, 소관부처 변경,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상위법령상 근거 없이 입주자로 하여금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삭제(안 제11조)

-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로 각각 명칭 변경(안 제6조, 제18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용어 등 변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정비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주택법」, 「지방자치법」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최 명 호

- 본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국민주택 입주자로 하여금 화재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한 불합리한 사항을 삭제하고, 변경된 소관부처 명칭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용어 변경 등을 수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